

貯水槽 管理委員會規程

(制定施行 1983. 8.13)

第1條(目的) 貯水槽의 構造와 設置方法, 維持管理 清掃 消毒方法에 關한 研究와 技術의 向上 및 普及等의 業務를 遂行하기 爲하여 貯水槽管理委員會를 設置運營 하므로서 國民生活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.

第2條(定義) 이 規程에서 韓國水道協會(이하協會라한다) 貯水槽 管理委員會(이하 委員會라한다)라 함은 貯水槽清掃業者를 管理하고 情報 研修등 必要한 事業을 하는 組織을 말한다.

第3條(事業) ① 委員會는 貯水槽와 關聯되는 事業을 管理할 수 있다.

② 委員會의 事業計劃은 協會會長의 承認을 받아 施行하며 그 結果를 會長에게 報告하고 協會理事會의 追認을 받는다.

第4條(委員會)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和 幹事委員 1人을 포함한 6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.

② 委員은 貯水槽 關聯事業에 從事하는 協會會員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으로 會長이 委囑한다.

③ 最初의 委員은 會長이 選任한다.

④ 委員長과 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하며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.

第5條(委員) 貯水槽分野에 從事하는 者로서 協會會員으로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委員會를 거쳐 委員長의 推薦으로 加入할 수 있다.

第6條(會議) ① 委員會를 召集할 때에는 會議 3日前에 通報하여야 한다.

② 委員會 會議에 委員이 不參하고 書面으로 그 意見を 提出하였을 때에는 出席한 것으로 한다.

③ 委員會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 出席과 贊成으로 議決한다.

附 則

이 規程은 協會理事會 議決로 效力을 發生한다.